

제 호

핵원료물질사용신고확인증

1. 상호:

2. 주소:

3. 대표자: (생년월일:)

4. 핵원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:

5. 사용 또는 소지목적:

6. 사용 또는 소지장소:

7. 신고일자:

위와 같이 「원자력안전법」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3항에 따라 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를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원자력안전위원회

직인

